

현안분석 2011-07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박 광 동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1-07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박 광 동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Funeral Environment

연구자 : 박광동(부연구위원)
Park, Kwang Dong

2011.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 장사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장사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장사법」 개정안의 법제도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분석함
- 장사법 개정시에 하위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사법 전반에 대한 법체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장사제도 개관

○ 법체계

- 현행 「장사법」은 7장 제43조로 구성되어 있음

□ 「장사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사의 날 지정

○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 보조

○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 검사의무

○ 유체화장·매장 등에 대한 긴급조치

○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 「장사법」 개정 검토

○ 개정 장사법 하위 법령 정비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 연습 및 장례의식 진행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 자격증 교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수수료 납부 기준의 제시가 필요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필요
-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의 가격기본법과의 부합

○ 위원회 대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한 하위 법령에의 명문화 필요
-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로의 전환시 하위 법령에 신고서 서식이나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 필요
- 화장로 설치 범위 완화에 대한 규정 필요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모지 등에 관한 특례 중 위원회의 2원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법령 규정 필요
- 양벌규정 개선

- 용어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비
- 용어정의 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 과태료 조항의 단순화
 - 이행강제금 규정에 대한 법정합성
- 위임입법 관련 개선 사항
 - 기록·보관의무 부과 관련 사항
 - 시설물 설치 금지의무 부과 관련 사항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 적립 대상 관련 사항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대상 관련 사항
- 그 밖의 개선 사항
 - 연고자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애 관한 사항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근거 규정 변경

Ⅲ. 기대효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법체계상의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적 근거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장사, 묘지, 장례식장, 화장료, 장례지도사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Various Amendments of the Funeral Act are suggested because of the rapid change of Korean funeral culture & environment
- Purpose of this study
 - Analysis of problems in the legal polic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the Funeral Act in view of both the response to the change in the funeral environments and the effectiveness of funeral administration

II . Main Contents

- Review on the Amendment of the 「Funeral Act」
 - Preparation of subordinate statute of the amended Funeral Act
 - The regulations on the hygienic management, washing & shrouding of a corpse and the progression of funeral ritual, etc. in relation to the curriculum of a funeral director are required
 - The proposal of the payment criteria of fees relating to the grant of a certificate is required in the Enforcement Rules

- The detaile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riteria of education institution for a funeral director are required to specify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
 - The coincidence of the criteria about the cancellation and suspension disposition of qualification with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 Review on the committee's alternatives
- The relaxation of criteria for the installation · creation of joint funeral facil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 The stipulation of the enforcement of regular inspection about the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a funeral incinerator to the subordinate statute
 - The regulation on the filing report form and attachment documents in the subordinate statute in converting a funeral hall business to a reporting system
 - The detailed subordinate statute & regulation on the construction · operation of a funeral information system are required
- Pla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 The simplification of provisions on the fine for default
 - The legal coherence of regulation on the performance compulsory money

III. Expected Effect

- Suggestion of the legal directionality about funeral, etc.
- Supply of the legislative data of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Amendment
 - Supply of legislative foundation data for the amendment matters of a legal system about laws and subordinate statute in the Amendment of Act on the Funeral, Etc.
 - Utilization as the policy and legislation data in establishing the policy of each department and improving the legal policy of each department

➤ Key Words : Funeral, graveyard, funeral hall business, funeral incinerator, hygienic managem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19
제 1 절 입법연혁 및 체계 변화	19
제 2 절 「장사법」 법체계와 관련 법률	27
1. 법체계	27
2. 관련 법률	29
제 3 장 「장사법」 개정안 분석	31
제 1 절 내 용	31
1. 이재선의의원 대표발의(2011.6.3.)	31
2. 유재중의원 대표발의(2010.12.17.)	32
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2010.11.23.)	33
4. 정부 발의(2010.10.11.)	34
5. 이석현의원 대표발의(2010.6.24.)	35
6. 손범규의원 대표발의(2010.4.8.)	36
7.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0.4.8.)	37

제 2 절 주요 논점 및 검토	38
1. 장사의 날 지정	38
2.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38
3.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41
4.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42
5.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43
6.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44
7. 사설 화장로 설치 비용보조	45
8.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무	45
9. 유체화장·매장 등에 관한 긴급조치	46
10.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46
제 4 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49
제 1 절 장례지도사 하위 법령 정비	49
1. 법규정 내용	49
2. 하위 법령 정비 방안	49
제 2 절 위원회 대안 내용 및 검토	57
1. 대안 제시 이유	57
2. 주요 내용 검토	59
제 3 절 위원회 대안 이외의 검토 사항	83
1.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83
2. 위임입법 관련 개선사항	86
3. 그 밖의 개선 사항	89
참 고 문 헌	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¹⁾, 현행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의 전환 과정에 있다. 다만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여자와 높은 연령대일수록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²⁾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사문화가 아직은 화장과 매장 중 어느 한쪽에 정착되었기 보다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곧 우리나라의 장사문화가 곧 매장문화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래 매장문화 보다는 현재는 매장문화 중심이 많이 약해졌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장사방법에 대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즉 산업화로 인한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화장 문화가 선호된 바

1) 가치관 내지 관습에만 의존하여 변화하였던 장사제도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상위 목적에 따라 제도적·행정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신재주, “장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3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12, 226면].

2) 201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1천 명 중 남자는 50.4%, 여자는 69.5%가 장사방법으로서 화장을 선호함으로써, 각각 남자는 40.9%, 여자는 16.3%에 그친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국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노장 연령층이 매장을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20대 중 31.3%가 화장을 선호한데 비해, 30대는 55%, 40대는 70.2%, 50대는 68.3%, 그리고 60대 이상은 78.9% 이상이 화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형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사환경 변화 현황과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2011.9.8, 61면; 보건복지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및 적국조사를 위한 연구, 지적연구원, 2010, 192면 이하].

있고, 최근에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자연친화적인³⁾ 자연장⁴⁾, 녹색장 등의 장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⁵⁾

그런데 이러한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을 사적자치에만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에 장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및 법제적인 다양한 개선방안의 연구가 되었다. 즉, 제도적으로는 장사시설 확충관련 제도 개선, 매장 및 묘지관련 제도개선, 화장 및 산골·납골 관련 제도개선, 장례식장 관련 제도개선, 장사행정 효율성 제고관련 제도개선, 장사제도 종합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그리고 법제적으로는 설치기준·절차 등의 개선, 규정의 미비·흠결 및 충돌 개선, 관련 법령의 정비, 묘지관련분쟁 방지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⁷⁾

-
- 3) 자연친화적이라 함은 장사방법과 상관없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주어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장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김수분, “장사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제15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10, 67면].
 - 4) 자연장은 개인묘지에 비해 연간 36,102원, 99.16%의 공익·경제적 가치를 국가와 국민에게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봉안은 연간 36,682원, 99.78%의 가치 환원 효과가 있다[김경래, “묘지의 가치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제16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9, 98면].
 - 5) 유럽 등에서는 묘지는 녹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관리되어 시민의 휴식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가족이 무덤을 유지·관리하고 이를 계승하는 계승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묘지사용권의 계약기간(갱신 가능)이 정해져 있는 등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비엔나의 묘지에는 벽묘지가 많은데 이때에는 경관도 배려가 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에서는 녹지계획이 행해진 광대한 토지에, 디자인성이 고려된 녹지에 묘석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横浜市墓地問題研究会, 横浜市墓地問題研究会報告書, 横浜市墓地問題研究会, 2010.9, 10面].
 - 6) 대표적으로 이삼식/고덕기/이필도/고수현/오영희/박효준,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를 들 수 있다.
 - 7) 대표적으로 이준우, 장사 등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장사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장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최근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장사법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 남아선호의 퇴조, 거주환경의 도시 집중 현상, 가족관계의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는 장사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장사제도의 법제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관점과 두 번째는 장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①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②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③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장사방법에 대한 다양화 논의들의 제기 및 이와 관련한 환경문제와 장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화 시도와 관련하여 예컨대 녹색장, 장례지도사제도 등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논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통된 논점에 대한 입법 시에 현행 「장사법」에 어떻게 입법화 되는 것이 타

8) 김경래, “인구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분묘관리의 전망과 대응”, 보건복지포럼 제16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1, 60-66면.

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⁹⁾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장사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장사법」개정안의 법제도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과 장사법 개정 시에 하위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사법 전반에 대한 법체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 ‘장사법’(약칭)은 추모문화의 주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의 설치조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만든 국토계획법 등 20여 개 법률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법률이라는 점이다[진기성, “중추절에 추모문화 개선을 생각한다”, 가톨릭신문 제2762호, 가톨릭신문사, 2011.9.11, 3면].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제 1 절 입법연혁 및 체계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집단묘지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12년 6월에 조선총독부령 제123호로 공포한 「묘지·화장장·매장 및 매장취체규칙¹⁰⁾」을 근대적 묘지제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1961년 12월 5일에 「구매장법」을 제정한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법 제도가 개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호화묘지와 무질서한 분묘설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래의 「구매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그 명칭도 「장사법」으로 바꾸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¹¹⁾ 이후 2001년 1월 27일 「장사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장사법」으로 제정된 이후 2011년 9월 현재 15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전부 개정이 2번, 일부개정이 8번,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이 5번이 있었다.¹²⁾ 이러한 개정형태를 본다면 장사와 관련된 현안 문제

10) 묘지·화장장·매장 및 매장취체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묘지의 신설과 변경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1조), ② 토지소유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무연분묘를 개장할 수 있고(제21조), ③ 공동묘지관리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재지의 위치 및 묘적(墓籍)을 신고하여야 하며(부칙 제4항), ④ 전항의 신고가 없는 것은 무연분묘로 하고(부칙 제5호), 묘지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묘지 이외에 매장함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

11) 장사법과 구매장법과의 차이를 보면, 첫째, 시한부 묘지제도를 두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며, 둘째, 무연고 묘지의 정리, 셋째 묘지 및 분묘의 점유면적의 축소, 넷째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다섯째, 불법 분묘 또는 묘지에 대한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제의 도입, 여섯째, 분묘기지권 불인정, 일곱째, 개인묘지설치에 있어서 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12) ‘장사(葬事)’에 관해 형식적이고 절차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죽은 자의 인격권이 나 추모정서와 장례(葬禮)부분은 전혀 도외시한 입법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의 장사법은 가칭 「추모문화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정도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전기성, 장사(葬事)법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09, 11면].

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법체계적으로 정합성이나 현실의 장사제도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¹⁴⁾

[표1] 입법연혁 및 체계 변화

	제·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개정 이유
1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22개조		-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차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 2069호]	25개조	-신설 (3개조)	- 현행법이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시설과 관리를 규제함에 있어 <u>국토의 효율적인 이용</u> 면을 결여하고 있음으로 이를 조정하고 묘지설치의 지역과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u>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u> 하고 <u>공공복리의 증진</u> 을 기하고자 제6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1968.6.11)에서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안토록 의결하였음

13) 일본법과 한국의 ‘장사법’의 목적규정에서 다른 점은 일본 법률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의 규정이 없는데, 이는 일본은 화장률이 99%에 달해 묘지를 설치하기보다는 잔디장과 수목장 방식이 주를 이루어 묘지로 활용되는 토지상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전기성, 앞의 글, 13면].

14) 박광동,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3, 212-214면.

	제 · 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 ·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개정 :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함 - 제5조의2(매장·화장 및 개장의 기준) 신설 - 제8조의2(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신설 - 제15조의2(손실보상) 신설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차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 2605호]	26개조	-신설 (1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제도의 개선으로 국토 활용가능면적을 확대하여 국토의 산업권화를 기하고 묘지 및 분묘신고에 따른 묘지관리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것임 - 제15조의3(손실보상) 신설
4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차 일부개정 1981.3.16 법률 제 3389호]	26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골묘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장의 확대를 유도 촉구함과 동시에 묘지면적 및 기지내의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설묘지 등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묘지의 적정설치와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묘지의 설치를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려는 것임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제 · 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 · 개정 이유
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3호]	27개조	-신설 (1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 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15조의4(청문)
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호]	27개조	-부처 명칭 변경 반영 -법체계 일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일반국민이 법 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 법 규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제 · 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 · 개정 이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차 전부개정 2000.1.12 법률 제 6158호]	7장, 38개조	-전부 개정 -법체계 정비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 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 하는 한편, 기타 불법묘지 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차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 6615호]	7장, 38개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으로써 유족들의 불합리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차 (타)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1호]	7장, 38개조	-「산지관리법」 제정	-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제 · 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 · 개정 이유
				가한 때에는 <u>산지관리법 제 14조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u> 와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차 (타)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7장, 38개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 신고”로 함.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차 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 8489호]	7장, 43개조	-알기 쉬운 법률 적용	-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u>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u> 하는 한편, <u>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u> 장사시설 설치 · 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 · 보수에 필요한 <u>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u>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제 · 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 ·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차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 9030호]	7장, 43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이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차(타) 일부 개정 2009.12.29 법률 제9847호]	7장, 43개조	「전염병 예방법」 전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차(타) 일부 개정 2010.5.31 법률 제10331호]	7장, 43개조	「산지 관리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제 · 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 · 개정 이유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차(타) 일부 개정 2011.5.30 법률 제10741호]	7장, 43개조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 ·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차 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8호 시행일 2012.8.5]	7장, 48개조	-신설 (5개조)	- 현행 장사의 방법으로는 매장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의 경우 좁은 <u>국토의 효율적인 이용</u> 과 묘지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시 발생하는 <u>환경문제</u> 와 화장시설 설치의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화장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체 또는 유골을 급속 냉동시킨 다음 작은 입자로 만든 이후 이를 땅에 묻어 장사하는 <u>녹색장을 도입</u> 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사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감염위험이 우려되는 바 <u>국가자격제도를 신설</u> 하고자 하려는 것임.

	제·개정	조문구조	특 징	제·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의2(장례지도사) -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 기관의 설치) -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제29조의6(청문)

제 2 절 「장사법」 법체계와 관련 법률

1. 법체계

현행 「장사법」은 7장 제43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는 목적, 정의, 국가가 설치·운영 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매장· 화장· 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은 제6조에서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자연장의 방법, 묘지의 일체조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는 제13조에서 제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사설묘지의 설치 등, 사설 화장 시설 등의 설치, 자연장지의 조성 등,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분묘의 설치기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묘적부의 기록· 관리, 공설묘지 등의 사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용료·관리비의 부과,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은 제27조와 제28조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무연분묘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은 제29조부터 제29조의6까지의 6개의 규정을 두고 장례식장영업,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설치,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청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장 장사시설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은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청문,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과징금처분, 비용의 보조, 검사 및 보고,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 벌칙은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규정을 두고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2] 「장사법」 법체계

<「장사법」 법체계(시행 2012. 8. 5)>	
<u>제 1 장 총 칙</u>	<u>제 4 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u>
제 1 조(목적)	제27조(타인의토지등에설치된분묘등의처리등)
제 2 조(정의)	제28조(무연분묘의처리)
제 3 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제 4 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제 5 장 장례식장영업</u>
제 5 조(묘지등의수급계획수립)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29조의2(장례지도사)

<「장사법」 법체계(시행 2012. 8. 5)>

제 2 장 매장· 화장· 개장 및 자연장의 <u>방법등</u>	제29조의3(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설치)
제 6 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 7 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 8 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29조의6(청문)
제 9 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u>제 6 장 장사시설정비· 제한명령 및</u>
제10조(자연장의 방법)	<u>시정명령 등</u>
제11조(묘지의 일제조사)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명령)
<u>제3 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u>	제31조(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명령 등)
제15조(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33조(청문)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
제17조(묘지등의 설치 제한)	지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분묘등의 점유면적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36조(비용의 보조)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21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묘적부의 기록· 관리)	<u>제 7 장 벌 칙</u>
제23조(공설묘지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제39조(벌칙)
부과)	제40조(벌칙)
제24조(법인묘지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제41조(양벌규정)
신고)	제42조(과태료)
제25조(사설묘지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43조(이행강제금)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부 칙

2. 관련 법률

「장사법」중 상조업과 관련하여 2010년 3월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즉,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최근 수

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 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장사법과 관련한 관계법으로는 「국가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환경정책 기본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제 3 장 「장사법」 개정안 분석

제 1 절 내 용

현행 「장사법」은 2011년 8월 4일에 장례지도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개정이 되었고, 그 시행은 2012년 8월 5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전에 다양한 이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들이 나왔으며, 이러한 개정안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② 장사의 날 제정, ③ 장례지도사제도의 도입, ④ 장례식장의 신고제화, ⑤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 ⑦ 장사유형의 확대(산분, 빙장 등), ⑧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⑨ 화장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의 시행 등을 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이재선의원 대표발의(2011.6.3.)

(1) 제안이유

친환경 자연장 제도를 장려·촉진하는 방향과 달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은 허가제로 규제위주로 운영되어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연장 활성화 및 촉진을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2. 유재중의원 대표발의(2010.12.17.)

(1)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사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감염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화장시설의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실수요자가 적시에 화장을 못하거나 이용 가능한 화장시설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컸고, 선점·중복 화장예약 등으로 이를 무단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된 시간의 화장로가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화장시설의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유족들이 묘지를 조성하거나 매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묘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어서 장사 관련 사항을 전자화된 방법으로 처리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례식장은 연간 약 25만 건에 달하는 시체의 염습·안치 등 위생적 처리 등으로 직·간접적 감염위험, 감염성 폐기물 및 실내대기 오염물질(결핵보균자 공기 비말) 발생 등으로 종사자는 물론 유족이나 문상객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다른 공중이용시설에 비하여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례식장 운영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가자격제도로서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족의 편의 제공 및 묘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며,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한다(안 제5조의2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등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의2 신설).

③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의6 신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8조의7 신설).

⑤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한다(안 제29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2010.11.23.)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산된 태아의 정의가 부정확하고, 최근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한편, 시체의 정의에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산의 경우를 ‘임신 16주’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는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어도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은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의학계는 24주 태아도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2)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상 시체의 정의를 ‘임신 4개월’을 ‘임신 16주’로,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는 판별시기를 ‘임신 7개월’을 ‘임신 24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

4. 정부 발의(2010.10.11.)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기준 완화 (안 제13조제2항)

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장례식장에 화장로의 설치 가능(안 제29조의2 신설)

① 화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②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이석현의원 대표발의(2010.6.24.)

(1) 제안이유

현재 점차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하천, 강,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散粉)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사방법으로 매장, 화장, 납골, 자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하천, 강, 바다에 산분을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분이 가능한 지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게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산분”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얻어진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으로 정의한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② 산분을 한 자는 산분 후 30일 이내에 산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산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10조의2 신설).

③ 산분이 금지되는 지역에 산분을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40조의2 신설).

④ 산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한다(안 제42조제1항제1호).

6. 손범규의원 대표발의(2010.4.8.)

(1) 제안이유

공설화장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 설치함에 따라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광역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용료를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 간 사용료의 현저한 차등으로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편중되어 공설화장장이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4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로 정하려는 것이다(안 제23조제1항).

(2) 주요내용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정하여야 한다”를 “정하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4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로 한다.

7.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0.4.8.)

(1) 제안이유

최근 국민들의 매장보다는 화장 문화의 선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화장로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화장로에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화장로에 대한 공인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화장로가 2010년 1월 1일 부로 대기배출오염시설로 지정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개정안은 화장로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안 제15조의2 신설).

②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안 제15조의3 신설).

③ 화장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의4 신설).

④ 화장로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39조제1호의2 신설).

⑤ 화장로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로를 사용한 자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40조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제 2 절 주요 논점 및 검토

1. 장사의 날 지정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국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사의 날 지정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고 이는 장사 관련 기관들이 자유로이 정하여 임의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2.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 중 장례지도사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어 2011년 8월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은 2012년 8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기관에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9조의2).

그리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9조의3). 다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③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제29조의4).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9조의5). 이 때 시·도지사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29조의6).

[표3] 외국의 장례지도사 제도¹⁵⁾

<p>□ 미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 방부처리사(embalmer) 면허제도가 있음. - 미국의 장례지도사나 방부처리사 제도는 면허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장례활동이나 시설 운영 가능 ○ 주요 직무 - 장례지도사 : 장례에 관한 사전예약, 시신운송, 매장, 화장 등 행정적 절차를 맡아 행함
--

15) 김대현,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35-36면; 김대현,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33-34면.

- 방부처리사 : 장례의식과정에서 유족 및 문상객들에게 추모할 수 있도록 시신의 보존을 위해 약품처리를 하는 자를 말함.
- 장례지도사나 방부처리사는 등급은 없으며, 다만 인턴(견습생)은 장례지도사나 방부처리사 감독 하에 훈련(약 30회)을 받은 자로 일정기간 후에 면허제도에 응시할 수 있음.
- 장례지도사나 방부처리사 응시자격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정의 장례관련과목을 이수한자나(평생교육기관 1년 과정), 전문대학(1년 과정, 2년 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영 국

- 영국의 장례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가 아닌 영국장례지도사협회에서 소정의 최고지도자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합격하면 장례지도사 인증서를 발급함.

□ 일 본

- 일본의 장례지도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임(1996년, 노동성 인가).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주무부처에서 인정하되 모든 자격운영관리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반공적인 자격제도임.
- 장례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 1급 : 모든 장례 수주 가능. 장례식장 설치, 의식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지식과 기능을 요구
 - 2급 : 개인의 장례 수주 가능. 장례식장의 설치 의식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지식과 기능을 요구함.

□ 프 랑 스

- 장례업종사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1994년 4월시행)을 소지하여야 함.
- 장례지도사의 주요직무로는 관, 영구차, 상가의 장례물품 치장, 유가족소송차량, 매장, 개장, 화장 등에 필요한 장례용품을 제공하고, 시신의 목욕, 염습, 고정, 분장 등임.

□ 독 일

- 직업전문과정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3년 과정으로 묘지정원사과정과 조경과정의 2개과를 운영

□ 스웨덴

○ 스웨덴의 장례지도사 제도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장례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스웨덴교회묘지화장연맹은 교육, 훈련 기능을 하고 있음.

3.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는 장례식장에 관하여 신고제로 전환대하여 이를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과 같이 자유업으로 운영하여도 행정명령 등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신고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¹⁶⁾ 그러나 현재의 장례식장에 대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그 규제정도는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 장치를 둬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장사법」에서는 장사행위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신고제와 허가제 외에 장례식장과 같이 자유업으로 규정하는 등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화장로에 대하여는 사설화장시설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4] 장사 행위 및 시설 설치의 신고·허가¹⁷⁾

구 분	신고, 허가	「장사법」 조항
1. 매장	30일 내 신고	제8조제1항
2. 화장	화장 전 신고	제8조제2항

16)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46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2011.10.10 방문)

17) 김대현, 앞에 글(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3면.

제 3 장 「장사법」 개정안 분석

구 분	신고, 허가	「장사법」 조항
3. 개장	신고	제8조제3항
4. 묘지설치 개인묘지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30일 내 신고 허가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5. 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제19조제2항
6. 화장장, 봉안당 설치	신고	제15조제1항
7. 자연장지설치 개인·가족 종중·문중·법인	30일 내 신고 허가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8. 장례식장 설치	자유업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정도와 국민에 대한 편의의 비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의하여 국민적 편의가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입법화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묘지의 경우에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장사와 관련하여서는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은 화장시설 예약 선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묘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¹⁸⁾

18) 김대현, 앞의 글(유재중의원 대표발의), 30면.

[표5] 장사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런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력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인 및 장사시설(장례식장 등) 운영자 양자로 하여금 사망자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으나, 의료인과 장사시설 운영자 모두 입력의무를 지우는 것은 절차의 중복성과 중복규제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즉, 의료인과 장사시설 운영자 중 일방에게 입력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의료기관이 장사와 관련하여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인 자체는 장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장사시설 운영자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5.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현행법상 화장시설 설치지역 제한 등으로 화장시설 확충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서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으

로써 화장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례의식을 행하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장소이고, 전문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 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부수시설로서 화장로 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설치지역 제한 등으로 화장시설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의 장례서비스 제공 기능에 화장기능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 시간·비용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무분별적 설치에 대한 규제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¹⁹⁾

6.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현재 공동장사시설의 설치가 제약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 공설묘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동장사시설의 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와,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에 기인한 것이다.²⁰⁾ 따라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의 용이성 확보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장사시설의 설치의 용이

19) 김대현, 정부 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11-13면.

20) 김대현, 앞의 글(정부 제출), 15면.

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수용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7. 사설 화장로 설치 비용보조

화장로의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직접 화장로를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화장로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화장로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²¹⁾

현행법 제15조에서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6조에 의해 공설화장시설에 대하여만 비용 보조가 가능하였고, 화장로 설치의 고비용의 문제로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사설화장로에 대하여 비용보조를 하게 되면 공설과 사설의 공정한 경쟁으로 화장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민간 화장시설(장례식장내 화장로) 확충에 따른 화장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²²⁾ 다만, 비용보조에 대한 자금의 확보가 문제가 된다. 향후 일정한 기금 형성이나 보조금의 축적 후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8.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무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과 관련한 화장시설에 대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과 관련한 검사는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²³⁾ 그러나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정성 등에 대한 검사는 환경오염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21) 김대현, 앞의 글(정부 제출), 16면.

22) 김대현, 앞의 글(정부 제출), 17-18면.

23) 김대현,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18-19면.

하지만 국민생활의 안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9. 유체화장·매장 등에 관한 긴급조치

자연재해 및 긴급사고(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에 의한 경우에 사체의 존엄을 지키는 대응이 필요하고, 사체의 신원확인, 사체화장 시설의 부족, 사망 신고 절차의 지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정묘지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즉, 막대한 재해 등에 의한 묘지매장의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화장·매장·묘지에 정박하는 업자에게 긴급차량 스티커에 대한 발급 등에 대한 신속한 취득 등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²⁴⁾

10.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장사제도와 관련하여 녹색장(빙장)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입법적으로는 2009년 이은재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빙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빙장시설의 설치, 빙장의 방법·장소 등을 화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손숙미의원 대표발의안에 의해 녹색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즉, 녹색장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작은 입자로 만든 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빙장을 의미한다.

24) 自民堂, 『復興への道標』 東日本巨大地震・津波災害及び原発事故対策に関する緊急提言(第二次), 自民堂, 2011.4, 6面.

검토하건대 녹색장 또는 빙장은 국민들에게 장사형태의 선택권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자료의 충분한 검토가 없으므로 친환경여부, 효율성 측면, 빙장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전제가 충족될 때²⁵⁾ 이를 법률의 범위 내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5)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4, 11-13면.

제 4 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제 1 절 장례지도사 하위 법령 정비

1. 법규정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장례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법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하였다(이하 「개정 장사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장례지도사 요건(제29조의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제29조의3),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제29조의4),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제29조의5), 청문(제29조의6),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부칙 제2조)를 규정하고 있다.

2. 하위 법령 정비 방안

(1)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기준,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개정 장사법」 제29조의2(장례지도사)제4항에서는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에 대한 시행규칙의 규정이 필요하다.

첫째, 자격검정기준과 관련하여 법제29조의2제3항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격검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필요 없다.

둘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 연습 및 장례의식 진행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증 교부와 관련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서식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자격증 교부 수수료(제29조의2제5항)

수수료란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역무(役務)]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의 역무 제공에 대한 것이 ‘수수료’이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사용료’이다. 광의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 이러한 수수료 규정은 보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개정경의 경우 새로운 ‘조(條)’를 삽입하기가 곤란할 때는 수수료 부과대상의 실제규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項)’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²⁶⁾

「개정 장사법」 제29조의2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 여부의 결정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로, 수수료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법률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동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수료 납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안 시행규칙 제00조(수수료)
<p>①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00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p>

2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국회사무처, 2008, 967-968면.

검토안 시행규칙 제00조(수수료)	
[별표 00] 수수료(제29조의2제5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허가(신규)	50,000원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0,000원
다.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5,300원(「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의 경우 2,000원)
2.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	28,000원
나. 변경신고	9,300원(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6,500원)
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5,300원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

「개정 장사법」 제29조의3제1항은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시행규칙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교육기관의 기준설정은 제도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항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등이 있다.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p>
<p>1. 시설 기준</p> <p>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p> <p>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2. 인력 기준</p> <p>가.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p> <p>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가맹거래사로 등록한 자 4)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p>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p> <p>3. 교육실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p> <p>가.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본부 50개 이상이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100명 이상, 또는 가맹거래사 3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p> <p>나.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p> <p>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별표 3에 열거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매 학기 개설할 것</p>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의2(실무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고절차

「개정 장사법」 제29조의3제2항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보건복지부령에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장례지도사 자격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자격자가 자격부여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자격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자격 취소권자는 자격을 부여한 기관이 된다.²⁷⁾

그리고 자격취소 사유와 같이 중대한 법령 위반은 아니나 일정한 자격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정지기간은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의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야 한다. 자격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규정한 경우에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²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자격자를 해당 자격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취소·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합이 원칙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해당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령상 규정된 경우에는 등록취소에 의하여 해당 자격업무를 못하게 할 수 있다.²⁹⁾ 이와 같이 자격 자체의 취소와 자격등록의 취소는 엄격하게는 구분할 수 있는바, 이 두 가지 제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개정 장사법」 제29조의5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격등록 제도를 두지 아니한 채 자격자가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 단지 신고만 하도록 한 때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은 자격 자체를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신고의 효력상실처분과 신고의 제한 규정을 두어 제재하는 사례(「건축사법」)도 있다.

그런데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할 때에는 자격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27) 국회사무처 법제실, 앞의 글, 721면.

28)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340면.

29) 법제처, 앞의 글, 339-340면.

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참고할 필요가 있다.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p> <p>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p>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자격 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자격 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자격 취소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2년

(6)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의 특례 요건

종전에는 일정 분야의 경력소유자 또는 직무경험자에 대하여 시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정 경력자에 대하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되어야 한다. 해당 자격제도의 목적, 업무의 공익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자격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경력 이고 충분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 경력자에 대하여 자격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³⁰⁾

그런데 「개정 장사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연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사업무에는 연습, 장례의식 진행 등이 포함되므로 이들에 대해 모두 인정할 것인가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일정기간 이상 이러한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제 2 절 위원회 대안 내용 및 검토

1. 대안 제시 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김종률의원 대표발의 및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와 정부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장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

30) 법제처, 앞의 글, 330-332면.

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합하여 2011년 4월 15일에 대안(이하 ‘위원회 대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하였다.

위원회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둘째,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안치 등에 따른 직·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셋째,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한다. 그리고 넷째,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다섯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한다(안 제13조제2항).

둘째,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의2 신설).

셋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안 제29조).

넷째,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군·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9조의2 신설).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2 신설).

여섯째,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3 신설).

여섯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한다(안 제41조).

2. 주요 내용 검토

위원회 대안 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기준 완화,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무에 대한 도입,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화장로의 설치 범위 완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양벌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기준 완화

위원회 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구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방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사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현행	위원회 대안
<p>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u>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구성 및 관리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 -----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2)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화장로의 성능은 곧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성이 크고, 화장로의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불안감 문제와 직접 연관성이 크다.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 실시를 통하여 환경문제와 국민의 불안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현 행	위원회 대안
<p><신 설></p>	<p>제15조의2(화장로의 검사) 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장 등은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에 따라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정기검사의 기준·절차·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그런데 위 위원회 대안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화장로 정기검사기관의 지정, 제15조의2제4항에서는 화장로 정기검사의 기준, 절차, 조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 화장로 정기검사기관 지정

위원회 대안 법 제15조의2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대한 2가지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① 1안: 부령에서 전문기관을 명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례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을 제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참고>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한국기계연구원

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② 2안: 부령에서 지정절차(신청, 지정, 고시), 지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화장로 정기검사의 기준, 절차, 조치사항

위원회 대안 법 제15조의2제4항은 정기검사의 기준·절차·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기검사기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참고하여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참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둘째, 정기검사 절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참조

⑦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 가. 설계도면
-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셋째,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을 참고할 수 있다.

제 4 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참조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참조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3)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로의 전환

현행 장례식장의 운영은 자유업인데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의미하여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안치 등에 따른 직·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원회 대안
<p>제29조(장례식장 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장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9조(장례식장영업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다만, 위원회 대안 법 제29조제1항에서 장례식장 영업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서식이나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시행령상의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화장로 설치 범위의 완화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 4 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군·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현 행	위원회 대안
<p align="center"><u><신 설></u></p>	<p><u>제29조의2(장례식장에서의 화장)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영업자는 해당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규모의 범위에서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아닐 것</u> <u>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일 것</u> <u>3. 보건위생상의 위해 및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u>
<p align="center"><u><신 설></u></p>	<p><u>②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다만, 위원회 대안 법 제29조의2제2항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첫째, 허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허가신청,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시체를 위생적으로 충분히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소각시설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례 참고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 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5)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를 2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위원회 설치제한 정책에도 위배되며 운영의 통일성 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시·도에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의 심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다.³¹⁾

현행	위원회 대안
<p>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신설></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u>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 등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u></p> <p>② ----- -----</p>

31) 강현철, “장사법의 법체계 분석”,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1.9.8, 21-22면.

제 4 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위원회 대안
<p>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u>보존묘지심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p> <p><신설></p> <p>④ 제1항에 따른 <u>보존묘지심사위원회</u>의 구성·운영, <u>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u>(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p> <p>-----.</p> <p>④ 제2항-----</p> <p>-----.</p> <p>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p> <p>⑥ <u>보존묘지심사위원회</u>-----<u>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기준·절차, 관리 및 지정 해제</u>-----.</p>

(6)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대안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장사정보체계의 선진화 도모 및 국민 편의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와 위탁을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사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위탁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운영센터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³²⁾

그리고 위원회 대안 법 제32조의3과 관련하여서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 행	위원회 대안
<p><신 설></p>	<p>제32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p>

32) 강현철, 앞의 글, 12-13면.

제 4 장 「장사법」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위원회 대안
	<p>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보건복지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u><신 설></u></p>	<p>제32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p> <p>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1)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원회 대안 법 제32조의2제3항은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첫째,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업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7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7조(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1.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 제10조에 따른 수급자 현황의 기록·관리 및 보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둘째, 장사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규정할 필요 없다. 다만 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려면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사망자정보의 등록 및 제공범위

① 사망자정보의 등록

위원회 대안 법 제32조의3제1항은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망자의 기본적인 정보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사망자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사망자정보가 빠짐없이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0 예 시
- 사망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망 장소, 일시, 사인 - 매장, 화장, 봉안 등의 구분에 따라 장소, 일시, 기간 등

② 사망자정보의 제공범위

위원회 대안 법 제32조의3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예컨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이 사망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③ 사망자정보 관련 유족의 동의

위원회 대안 법 제32조의3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자정보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화장 등의 신청을 받을 때 동의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 기록·보관

위원회 대안 법 제15조제4항은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장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영 제18조제2항·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기록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대장의 보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의 보관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봉안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봉안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장사시설의 폐지사실 통보, 사후처리 및 조치

위원회 대안 법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나 유골의 연고자 등에 대한 폐지사실 통보, 시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및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통보에 대해서는 현행 「장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처리 및 조치에 대해서는 이는 장사시설 설치자와 연고자가 합의하여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없다고 보인다.

5) 매장 등의 상황 보고

위원회 대안 법 제37조제2항은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사항은 매년도 상황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정보의 충실화 정도도 필요할 필요가 있다.

(7) 양벌규정의 개선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직접 행위를 한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양벌규정의 취지가 종업원의 위반행위 자체에 이미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려는 것이고, 법인 또는 개인의 무과실 입증 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업원의 위반행위만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양벌규정의 입법에서는 주의·감독의무의 이행, 방지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등 면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³⁾

33)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국회사무처, 2008, 1104-1107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장사법」 제41조에 대한 위원회 대안 법 제41조는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즉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위원회 대안
<p>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8) 용어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비

위원회 대안 법은 현행 「장사법」 제5조제2항 중 “중·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를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령 제4조도 중 “중·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검 토 안
<p>제 4 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p>제 4 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u>지역수급계획</u>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역수급계획</u>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검 토 안
<p>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p>	<p>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u>지역수급계획</u>의 수립 지침에 따라 <u>지역수급계획</u>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u>지역수급계획</u>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u>지역수급계획</u>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지역수급계획</u>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u>지역수급계획</u>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p>

현 행	검 토 안
<p>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p> <p>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p>	<p>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p> <p>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u>지역수급계획</u>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p>

(9) 용어정의 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위안회 대안법 제2조9호라에서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즉, 이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봉안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 봉안담의 정의 규정을 둬 따라 시행령에서 따로 정의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중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봉안담”으로 하고, 법률에서 봉안담의 정의 규정을 둬 따라 규칙에서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10)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위안회 대안법 제27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를 받아 매장 또는 봉안·자연장을 한 경우에 해당 매장 또는 봉안·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무연분묘에 준하여 처리(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24조³⁴⁾)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제 3 절 위원회 대안 이외의 검토 사항

1.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1) 과태료 조항의 단순화

법률 조문배열의 일반원칙 중 경제의 원칙은 법문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중복을 피하며, 불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축소·의제·준용·변환을 기해야 한다.

경제의 원칙은 법전의 지면을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상 시간과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법경제상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장사법」 제42조의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 시행)에서 과

34)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사설묘지의 설치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5) 국회사무처 법제실, 앞의 글, 101면.

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현행 「장사법」 제42조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⁶⁾

현행법	검토안
<p>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u>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36) 국회법제실, 앞의 글, 1118-1120면.

(2) 이행강제금 규정(법 제43조)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목적의 달성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비례하여 부과상대방인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그 성격상 벌칙이 아니나, 최초로 건축법에 도입되면서 벌칙의 장에 규정되었다. 이는 명백한 입법상의 잘못으로 그 후 다른 법률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벌칙의 일종으로 규정했는데, 최근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바로 잡아 이행강제금을 행정처분으로 규정하였다.³⁷⁾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때 과태료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폐지하여 금전벌의 중복부과라는 인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시정명령·이행기간의 지정, 계고, 의견제출통지를 거친 후에 부과하도록 한다.³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장사법」 중 이행강제금 규정인 법 제43조의 조문 위치는 행정처분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 제31조 다음에 이행강제금 규정을 위치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부과하여야 하나,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시정명령이 전제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을 별도로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제31조에 마련하고, 명령의 이행 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7) 국회법제실, 앞의 글, 589면.

38) 국회법제실, 앞의 글, 590면.

2. 위임입법 관련 개선사항

하위법령에의 위임입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증가, 경제·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입법분야의 증대 등으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의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괄적인 위임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그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일반적 위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³⁹⁾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정도는 이와 같이 규정 대상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입법할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문을 표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⁴⁰⁾

이러한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현행 「장사법」에서의 위임입법의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록·보관의무 부과 관련

현행 「장사법」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제4호에서는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대하여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9) 법제처, 앞의 글, 303면.

40) 법제처, 앞의 글, 304면.

그리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록·보관 의무를 「장사법」 제15조에서 기록·보관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장사법」 제15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 「장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록·보관 의무 부과 경우도 이와 동일한 방안의 구상이 필요하다.⁴¹⁾

(2) 시설물 설치 금지의무 부과 관련

「장사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구체화된 시설물을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이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에 금지의무의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 적립 대상 관련

「장사법」 제25조 제1항은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구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사설

41) 이세정, “장사 등의 관한 법률상 위임입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본의 장사법 제의 현황과 우리나라 장사법의 위임사항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9.26, 49면.

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대상 시설로 열거하고 있다.

- i) 법인이 설치(구성)·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 ii)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 iii)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여기서 ‘관리금 적립의무의 부과’는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iii)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은 그 대상 및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⁴²⁾

(4)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의 대상 관련

현행 「장사법」 제17조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17조제4호는 위임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 특히,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제39조), 그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행령 제22조제4항⁴³⁾의 내용은 대부

42) 이세정, 앞의 글, 52면.

43)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생략)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본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다.

3. 그 밖의 개선 사항

(1) 연고자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현행 「장사법」 제2조제16호 사목이 이 법 시행령 제2조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령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를 위한 시설의 장”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가 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설치근거가 된다.

그런데 제4항은 제2항의 시설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근거 규정 변경

현행 「장사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 제8조 제2항 제1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장사법 시행령」에서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08.
- 보건복지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및 적국조사를 위한 연구, 지적연구원, 2010.
- 전기성, 장사(葬事)법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09.
- 김경래, “묘지의 가치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포럼 제16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9.
- 김경래,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분묘관리의 전망과 대응”, 보건복지포럼 제16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1.
- 김수분, “장사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보건복지포럼 제15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10.
- 박광동,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3.
- 신재주, “장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3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12.
- 강현철, “장사법의 법체계 분석”,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11.9.8.
- 이세정, “장사 등의 관한 법률상 위임입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본의 장사법제의 현황과 우리나라 장사법의 위임사항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1.9.26.
- 임형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사환경 변화 현황과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2011.9.8.

참 고 문 헌

전기성, “중추절에 추모문화 개선을 생각한다”, 가톨릭신문 제2762호, 가톨릭신문사, 2011.9.11.

김대현,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김대현,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김대현, 정부 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김대현,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4.

横浜市墓地問題研究会, 横浜市墓地問題研究会 報告書, 横浜市墓地問題研究会, 2010.9.

自民堂, 『復興への道標』東日本巨大地震・津波災害及び原発事故対策に関する緊急提言(第二次), 自民堂, 2011.4.

<http://www.ncms.go.kr/>(2011.10.10 방문)

<http://www.ehaneul.go.kr/>(2011.10.10 방문)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46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2011.10.10 방문)